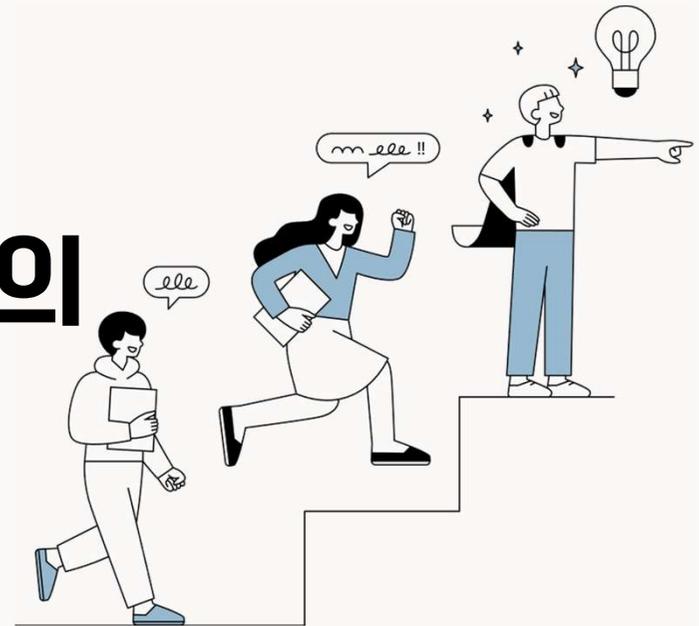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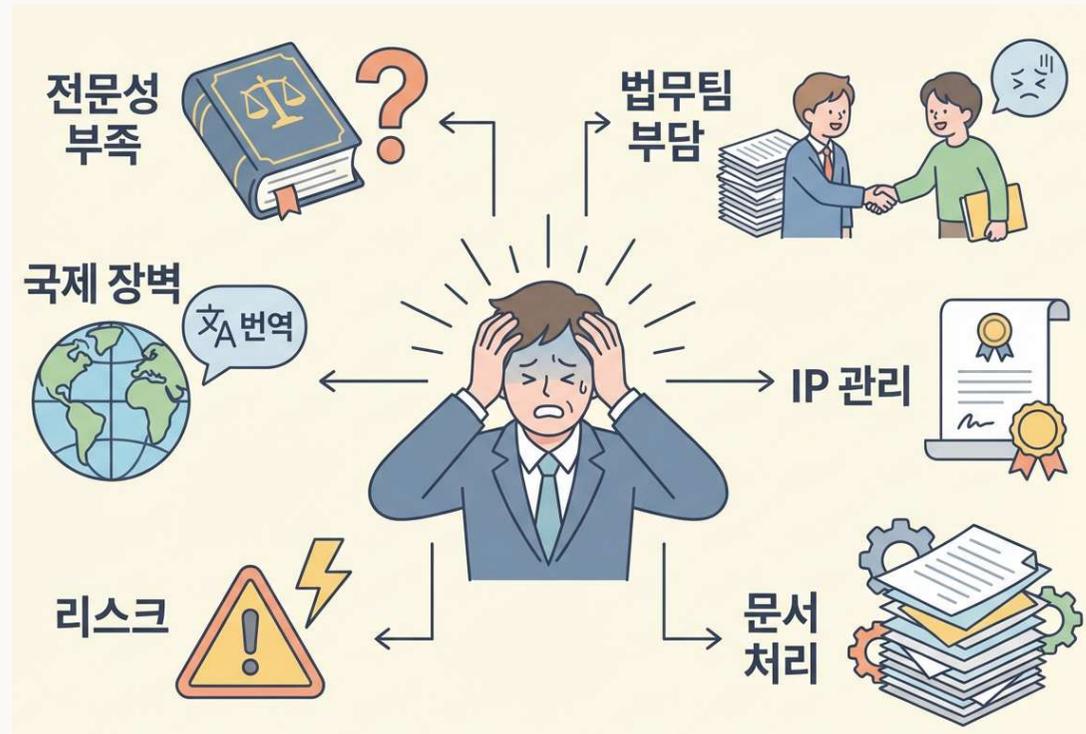
공동연구개발 계약업무의 확장 및 시 활용

2025 정부연구비 집행관리 우수사례·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혜진**



문제상황

공동연구 계약업무 왜 어려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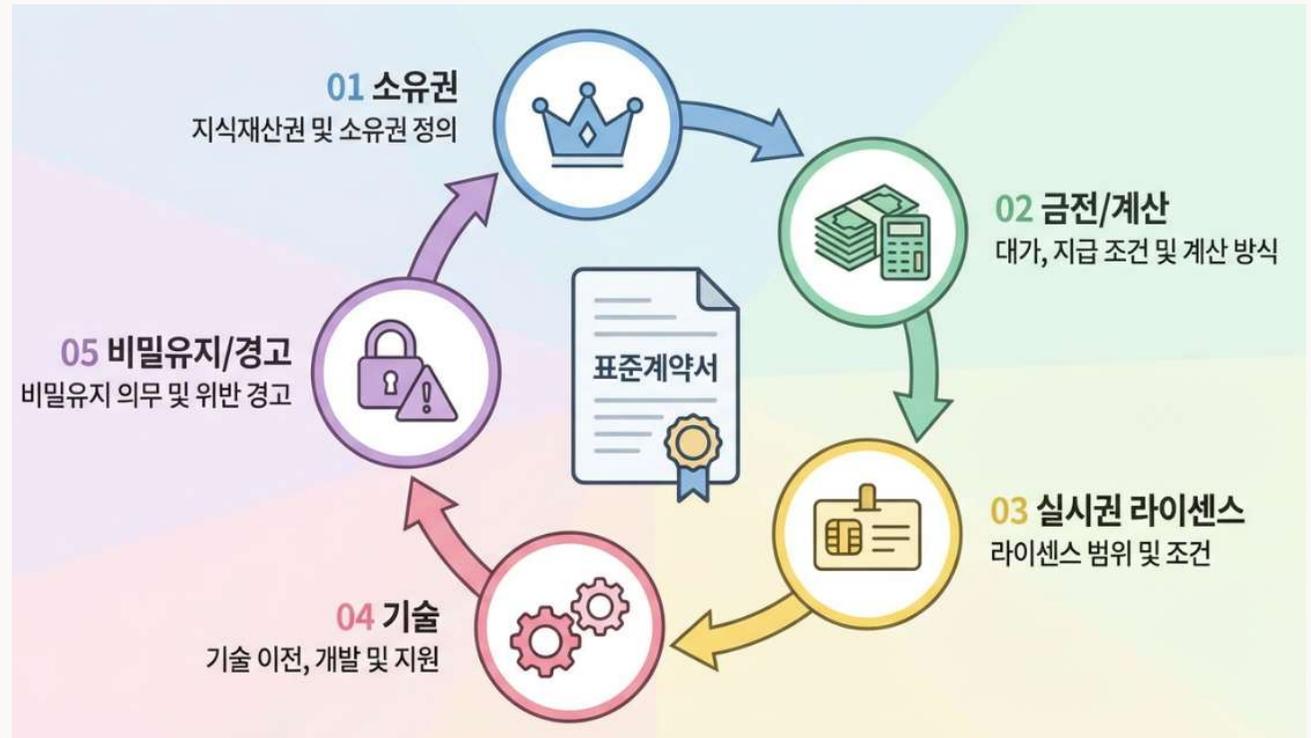
문제인식

성과 보호는 계약 시점부터 시작



표준계약서 분석

우리기관의 표준계약정책은?





연세대학교 표준계약 분석 사례

① 공동소유 원칙

유·무형 결과물에 대한 소유 관계 설정
공동소유 원칙
자문계약, 회사의 기보유지재권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예외

②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 비용은 회사 부담 원칙

③ 기보유기술 통상실시권

기보유 지식재산권의 영구·무상 실시권은 허용 불가
기보유 지식재산권의 제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발명 보유한 것으로 한정

④ 비밀유지, 권리침해, 손해배상

제3자 권리침해 보증 불가: 고의나 과실에 한정
비밀유지, 조항 존속기간 1년으로 제한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계약금액 상한으로 지정

협상전략

불가원칙과 마지노선을 정하자!



1-2-3 협상 전략

구분	비밀유지 존속기간	손해배상 한도	기보유 기술 실시권
1안 (안전) 단기/1년	1년, 핵심 정보만 제한적 보호. 최소한의 안전장치.	계약 금액 이내로 엄격히 제한. 낮은 배상 책임.	기보유 기술에 대한 실시권 없음, 협의를 통한 별도 계약 필요.
2안 (균형) 중기/3년	3년, 계약 종료 시 즉시 만료. 표준적인 보호 수준.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 분담.	특정 프로젝트 관련 기보유 기술에 한해 유상 실시권 부여, 조건부 접근.
3안 (고위험) 장기/5년+	5년 이상, 종료 후에도 3년간 일부 조항 적용. 매우 엄격한 관리.	상한 없음, 실제 손해액 전액 및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최대 보장.	상대방의 기보유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무상 실시권 및 개량 기술에 대한 접근권 확보.

안전 지향 →
 균형 추구 →
 고위험 감수

협상 유연성 및 리스크 수준 변화



연세대학교 1-2-3 협상

계약불가 대원칙

- 기간과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무상의 전용실시권 불허
- 해외특허 지분비율에 따른 유지비용 공동 부담 불허
- 발명자 제한이 없는 기보유기술의 실시권 허여 불허

① 제 1안

연구성과 대학산단 소유
지식재산권 출원 유지비 회사부담
기보유 지재권의 영구 무상 실시권 불허
제3자 권리침해 보증 불가
비밀유지 의무 1년
손해배상은 계약금액 상한

② 제 2안

연구성과 공동소유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는 공동부담
연구목적, 연구기간 내 무상실시는 허용
고의성 단서 추가
비밀유지 의무 3년
손해배상은 계약금액의 2배

③ 제 3안

자문계약이나 계약기관의 기보유기술 계량연구는 단독소유 인정
기보유 지재권의 제한적 실시권 허용
고의 및 중과실로 한정
비밀유지 의무 5년
손해배상은 계약금액의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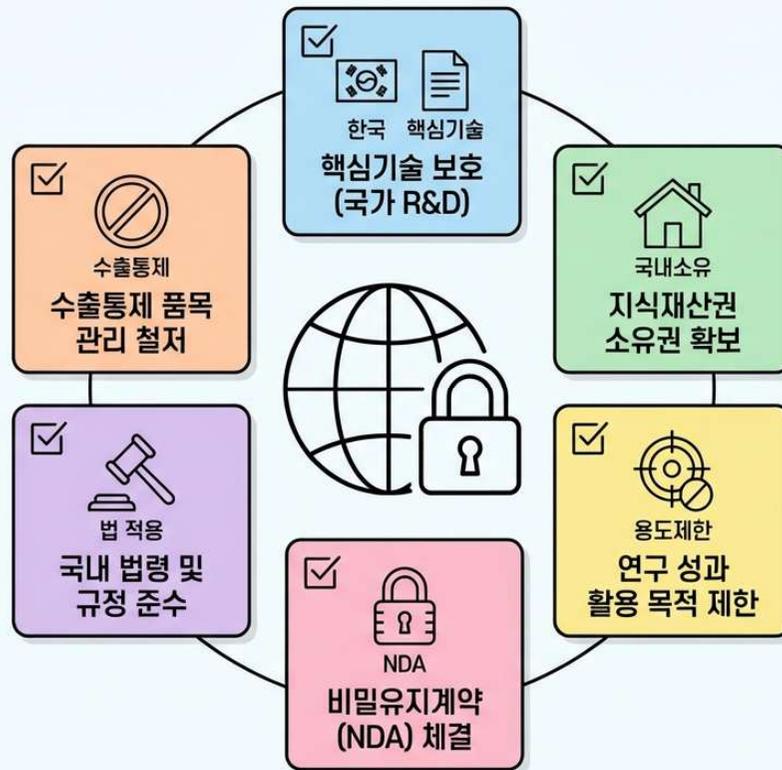
업무매뉴얼

항목	표준계약서	계약 불가	수정 1항		수정 2항		수정 3항		수정 4항(연구책임자 확인서 및 답장 정제)	
			변경내용	사유	변경내용	사유	변경내용	사유	변경내용	사유
연구결과물	유, 무형적 결과물 (연구기재, 연구서적, 연구보고서, 과제중보 출구 결과물 등)	공동소유	공동소유					(회사)소유 (지식재산권 제외)		연구결과물 등 무형적 결과물의 권리를 귀속, 귀책에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무형적 결과물)	소유권	공동소유	공동소유					(회사)소유 1) 지식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간의 기보유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의 개발으로 발생한 경우 3) 50:50 비율로 지분 분할		1) 본 연구로 지식재산권이 발생 한 연구는 당사자의 기보유가 일체 결과물의 발생되는 것으로 본 연구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1차 개발	개발한 기관의 소유 (회사)에게 전출할 시권 허여 불가	개발한 목적을 기 재하지 않은 무형 의 전출할 시권 허 여 요구 시 계약불 가					연구 기간 내 연구 목적에 한하여 무 형의 전출할 시권 허여		본 연구로 발생하는 개발 특허 등인하여, 당사권 상정으로 1 차로써 모든 권리를 할 것임
	등록 비용	(회사)에서 부담	계약목적 지분비 율에 따른 등록비 율 공동 부담 개 안 불가	(회사)에서 부담	상세로 대략에서는 실사를 하지 않되 때문에 실시권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특허비용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계약명목으로 지 분비율대로 부담 해외 특허는 (회사)에서 부담		지분비율에 따라 (회사)(산단)공동 부 담		본 연구에 속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시행세칙 제 3조에 따라 지분기관에서
	유지 비용	(회사)에서 부담	계약목적 지분비 율에 따른 유지비 율 공동 부담 개 안 불가	(회사)에서 부담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계약명목으로 지 분비율대로 부담 해외 특허는 (회사)에서 부담		지분비율에 따라 (회사)(산단)공동 부 담		본 연구에서 속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시행세칙 제 3조에 따라 지분기관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 및 제3자 행위	상대방의 서면 동의 후 가능		상대방의 서면 동의 후 가능		(회사) 서면 동의, (산단) 서면 동의		(회사) 동의 없음		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발생하는 영 체의 배 출은 지분기관이 부담하거나 지분기관에서 지불받은 연구비에서 부 담하도록 규정
	실시권 사용 대상	당사자만		당사자만		당사자 및 지분사외 임직원명		당사자 및 지분사외 임직원명		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발생하는 영 체의 배 출은 지분기관에서 지불받은 연구비에서 부 담하도록 규정
교육 및 기술/업무 지원	교육 및 기술/업무 지원	교육/기술/업무 지원의 장소, 기간, 방 법 등에 대해서는 상호간 별도 합의에 의한다.			교육/기술/업무 지원을 계약 종료 이 후에도 무상으로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발생하는 영 체의 배 출은 지분기관에서 지불받은 연구비에서 부 담하도록 규정
기술이전	기술이전(금액 등)	기술이전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등 합의	별도 합의	계약서첨에는 대상 기술이 특허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 차용을 위한 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산단 지분에 대한 대입비도 청정 가능 하는 보상 약함					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발생하는 영 체의 배 출은 지분기관에서 지불받은 연구비에서 부 담하도록 규정
지체성금	지체성금	총액 1000만원 공통의 제고, 구제: 1000분의 0.75 공통의 수리, 기공, 대외, 용역: 1000 분의 1.25 공통 용역료용 제고, 구제: 1000분의 1.5 운송, 보관 및 양곡기공: 1000분의 0.75	1000분의 1.25	국가를 담보하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 지체성금보다 상향
기보유기술 및 지식재산권	기보유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1)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개별 보유한 것으로 인정 2) 실시권은 별도 합의	연구책임자 및 참 여 연구원이 개별 보유한 것으로 개 별 합의 않은 경우	기보유기술 활용 시 연구기간 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3자에게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	무상 통상실시권 용어보다는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 한화	기보유기술 활용 시 연구기간 내 연 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다. 연구목적으로(연구) 무상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연구기간 내 기간과 목적의 명시되어 있다 면 무상 통상실시권 비용	기보유기술 활용 시 연구목적에 한해 (무상)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본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회사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 기보유기술을 활용한 계약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 할 경우 연구책임자로서 는 "무상"의 조건은 회사 요구
	제3자의 권리침해	보통하지 못함	보통하지 못함	권세권이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조치가 불가능하 고, 실제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 하여 조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산하임직원에서 곳이 침해에 대하여 보통하지 못함.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보통		연구책임자는 본 계약에 불만을 상대하지 않을 것을 보통주 요한 조건을 할 것을 확인한다. 대입되는 제3자의 지적 재산 권의 침해에 조처를 이행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	고의로	고의로		고의 및 과실			고의 및 과실		연구 책임자 관련 권속이 발 생하여 이에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임 계약상대당 또는 제3 자 배상하기 위하여 계약한다.
중의 및 유사 연구	중의 및 유사 연구	연구지 연구중도에 계약이 성기로 표 준계약서에서는 해당조항 없음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중의 연구 간의 사전 승인	상하임직원과의 계약은 전제대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계약에 포함되고 중의 및 유사 연구의 범 위가 없음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연구주체를 정하여 중의 및 유사연 구의 범위 설정			중의 및 유사 연구 금지 (연구책임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주체 변경에 한함)		중의 및 유사연구 금지 조항의 유의해결입니다.
	비밀유지 기간	1년	1년		1년			1년		
비밀유지	학술적 목적의 사용	학술적인 활동은 제외	학술적인 활동은 제외		학술적인 활동은 경우 서면 통보			학술적인 활동일 경우 서면 통보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대해 고의 및 과실은 모든 손해배상 연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사용	불가	불가		(산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통하여 시 용					
계약조항 존속기간	계약조항 존속기간	연구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당조항 없음	계약종료 후 1년		계약종료 후 3년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유용		계약조항이 계약종료 후에도 유용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연구결과 관련 (비밀유지, 제
당초 명칭	당초 명칭 사용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산단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비밀유지) 36.5.1. 계약서 제 36.5.1. 조항

해외계약

국내계약과 무엇이 다를까?



흩어진 국가전략 기술관리 체계 하나로...513개 기술 19개 분야로 통합 관리

조가현 기자
 입력 2026.03.11. 오후 4:01 기사원문

👍 3 💬 1

|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처마다 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보호 중인 기술 513

공통 기술분야 (19개)	연구개발·육성 유망기업 지원		기업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특화단지 등 산업자원 기술유출 방지(사전승인)	기술유출 방지 (사전심사)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기술)	국가전략기술 (8대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14대 구분, 284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6대 분야, 19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13개 분야, 79개 기술)	
1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반도체	반도체	
2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3 AI·SW	인공지능	인공지능	지능 정보*	차세대 SW·보안*		
4 양자	양자					통신
5 통신	차세대 통신		차세대 방송통신			
6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지능정보 차세대 SW·보안			
7 바이오	첨단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백신	바이오·헬스	바이오	생명공학
8 로봇	첨단로봇-제조			로봇	로봇	로봇
9 육상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철도
10 우주·항공		우주항공 해양		항공·우주	우주	우주
11 조선·해양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지능정보, 첨단소부장		조선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국제공동연구 협약 시 연구보안에 유의하자!



1. 연구 보안 유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물 보호를 위한 사전 주의



2. 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 금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무단 반출 엄격 제한



3. 지식 재산권 국내 소유

공동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내 권리 확보 및 보호



4. 실시 범위 제한

연구 결과물의 사용 및 배포 범위를 명확히 규정



5. NDA 비밀유지 방지 강화

비밀유지협약(NDA)을 통한 기밀 정보 유출 방지 조치



6. 국내법 적용

모든 연구 협약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국내 법률 우선 적용

AI 활용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AI 활용 가이드

계약조항의 민감정보 노출금지!



1 전체 파일 업로드 금지

계약조항 민감 정보 유의



2 민감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는 입력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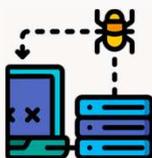
3 AI입력 전 보안수준 확인

번역 요청 시 제한적 활용 필요



4 폐쇄형 AI사용

대화 이력 및 학습기능 비활성화



5 연계 프로그램의 안정성

보안 취약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6 AI 생성물에 대한 재검증

정확성 윤리성 진실성 확인 필요

파일기반 챗봇-GPT

The screenshot shows the configuration page for a GPT chatbot. On the left sidebar, the 'GPT' option is selected. The main area has a '구성' (Configure) button at the top right. Below it, there are fields for '이름' (Name), '설명' (Description), '지침' (Instructions), '대화 스타터' (Conversation Starter), and '지식' (Knowledge). The '지침' field contains the text: '이 GPT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나요?'. At the bottom, there is a '파일 업로드' (File Upload)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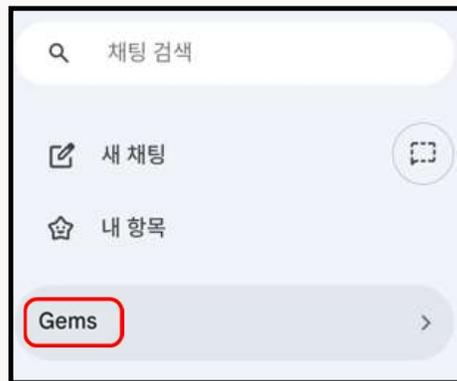
프롬프트 입력

어떤 파일 몇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왔는지
마지막에 출처를 표기할 것

파일과 관련된 질문이지만 답변하지 못할 경우
"죄송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답변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할 것

파일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경우
"죄송합니다. 저는 주어진 파일에 있는 답변만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것

파일기반 GEMS-Gemini



프롬프트 입력

어떤 파일 몇 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았는지 마지막에 출처를 표기

파일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죄송합니다. 주어진 정보에서 찾을 수 없지 않습니다." 라고

파일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경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파일기반 챗봇 활용 사례

국제공동연구계약

라이브 · 나만 보기

만들기 구성

이름
국제공동연구계약

설명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할 때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 확인- 이해진

지침

목표

* 절차에 맞춰 '지식(Knowledge)'에 있는 문서를 읽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합니다.

- *몇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왔는지 마지막에 표기할 것*
- 사용자에게 필요할 만한 정보를 가독성있게 구조화하여 출력할 것
- *20240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과 관련된 질문이지만 답변하지 못할 경우 *죄송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답변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

제공한 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가 GPT와의 대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스타터

지식

202402 국제공동연구개발... PDF

붙임4. 2025년 산업기술... PDF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 PDF

KASAN 기술이전, 라이선스... PDF

붙임5. 국제계약서 주요사... PDF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다중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참고자료.zip zip 아카이브

2025 산업기술국제협력(c...) zip 아카이브

국제공동연구계약 5.1

공유하기

계량기술에 대한 소유 조항을 검토하는데 해외기관과 소유권을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

아래 내용은 **「20240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근거하여, 계량기술(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해외기관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해외기관과 계량기술(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연구성과(Foreground IP)의 귀속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이를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원시 소유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성과를 완성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시 소유 기준
 - 단독 수행 성과를 → 해당 기관 단독 소유
 - 공동 수행 성과를 → 기관 간 공동 소유(공동발명 비율 기준)

★ 즉, 계량기술을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특허-데이터 등 성과물은 '공동 소유'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임.

출처: 202402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 연구개발성과 귀속(소유) 기준

새 채팅

채팅 검색

라이브러리

Codex

GPT

탐색하기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통...

회의록 작성 챗봇

국제공동연구계약

민간 연구계약서 검토

호라이즌 유럽

혁신법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연구과제 담당자 찾기

신학협력단 규정 및 자료찾기

채팅

계량기술 소유권 지정

메일 번역 및 요구사항 정리

Horizon Europe PIC Validati...

연세대학교 신학협력단 과...

연세대학교 신학협력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